

공 보

제624호 2017. 12. 27.(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43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434호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8

거창군 조례 제2435호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15

거창군 조례 제2436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19

거창군 조례 제2437호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47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3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3

거창군 규칙 제1237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5

거창군 규칙 제1238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8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18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61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166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04호선)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63
거창군 고시 제2017-16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70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1381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공고 72
거창군 공고 제2017-139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예고 76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
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3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76명”을 “6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62명”을 “66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76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662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679명</u>----- -----</p> <p>1. -----: <u>665명</u></p> <p>2. -----</p>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9 676	286 284	14	134 133	70 69	64	54	40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47 644	282 280	14	107 106	43 42	64	53	40	151
	4급	1	1							
	4~5 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608 605	268 266	11	101 100	39 38	62	49	39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제2조(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국비						
세출	국비							
	군비		110	115	120	125	130	600
	소계(a)		110	115	120	125	130	600
총 비용			110	115	120	125	130	600

3. 관련 의견

-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 정부 시책 추진 및 관리 인력 등 보강에 따라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증원 내역: 7급 2명, 8급 1명
- 연간 인건비 증가액: 110,000천원
 - 기본급 100,000천원, 수당 등 10,00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화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51
----------	----------

제출연월일	2017.11.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 정부시책 추진 및 관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676명 ⇒ 679명(증3명)
-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 ⇒ 66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3명
- 현행: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 조정: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제38조

나. 예산조치: 연 110,000천원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0. 31.~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34호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차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즉시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보장구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매달 수리 지원 대상자 내역을 제출받아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	<input type="checkbox"/> 보장구 수리비 <input type="checkbox"/>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거창군수(읍·면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 지원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 지원 중복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지원받은 품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지정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청구기간		비용	
수리건수		청구금액	

수 리 내 역

연번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수급권자 여부	전화 번호	이동기기 유형	수리 일자	수리 (교체) 부위	수리비용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철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7~102
----------	----------

발의일자	2017. 11. 23.
발 의 자	강철우, 이성복, 변상원, 이흥희, 권재경, 최광열, 형남현, 김종두, 표주숙, 김향란, 박희순 의원(11인)

1. 제안이유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 나. 수리업체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마. 장애인 보장구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신청,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5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1. 28. ~ 12.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현황(3): 경상남도, 양산시, 남해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35호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 ① 거창군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한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그 밖의
외부활동정도		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		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①, ②, ③은 해당 읍·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형남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7~104
----------	----------

발의일자	2017. 11. 23.
발 의 자	형남현·박희순·강철우· 표주숙·이성복·변상원 의원(6인)

1. 제안이유

- 관내에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대상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기준과 대상자 신청·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1. 28.~12.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완료: 없음
- ※ 전국 제정완료(14): 고창군, 순창군, 곡성군, 부안군, 해남군, 연천군, 경산시, 남원시, 나주시, 전주시, 서산시, 삼척시 등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7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36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통제관: 재난 총괄부서의 장
4.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보좌
3. 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별표 3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별표 4

나.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 구성도는 별표 6과 같다.

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별표 4, 별표 5의 비상단계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4.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분석과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5.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군 소속 관련부서의 장과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기관 직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거창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과 거창소방서장(다만, 거창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수습상황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중앙 및 경상남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① 군수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남도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와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군수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제21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에 피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4조 중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를 “거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제3조제3항 관련)

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상황 관 리 총 괄 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 총괄과
	상황보고서 작성팀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가)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나)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지진: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5)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8) TV 방송 모니터링 9)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안전 총괄과 재난 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관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5)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8)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안전 총괄과
	행정지원팀	1)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2)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3)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4)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과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협 업 기 능 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복지정책과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환경과
	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행정과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교통과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기획감사실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협업 기능반	재난관리 및 자원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경제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정책과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거창경찰서
	수색,구조·구급반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거창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거창교육지원청, 육군8962부대 6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사, 한국농어촌 거창함양지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	상황관리 총괄팀	1)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3)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4)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안전총괄과 행정과
	수습상황 파악팀	1)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2)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3)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지역사고수습본부, 거창군 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6)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협업 기능반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복지 정책과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환경과
	긴급통신 지원반	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행정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협업 기 능 반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교통과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기획감사실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경제교통과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정책과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협업 기능 반	사회질서유지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거창 경찰서
	수색,구조·구급반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거창교육 지원청, 육군8962부대 6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 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사, 한국농어촌 거창함양지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화재사고 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마.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재무과 안전총괄과 " " "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농업기술센터
	나. 저수지 사고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가스 누출 사고 나. 전력 사고	경제교통과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황사	환경과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교통과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가. 건설과 나. " 다. 경제교통과 라. 도시건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과

비고: 공동구 위험물 사고 등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장
실 무 반	주간: 안전총괄과 야간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

- 비고: 1. 재난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메신저(NDMS)를 관리하며, 재난상황 시 긴급재난문자시스템(CBS)을 통하여 상황전파를 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 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장
실 무 반	안전총괄과 1명

-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 요청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난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수습 부서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실과소 1명, 읍면 1명 비상대기 근무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주의보” 발표시
- 나. 태풍: 예비특보 발표시
- 다. 그 밖의 지진 및 화산 등: 규모 4.0이상 5.0미만 지진통보 또는 화산재주의보 발표 시 등

2. 실무반 편성: 12명+ a

통제관 (재난총괄부서의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부서의장)	○ 재난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	총 12+a명	
상황관리총괄반	반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주사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a)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9+a)	기획감사실(a), 행정과(1+a), 복지정책과(1+a), 경제교통과(1+a), 문화관광과(1+a), 산림과(1+a), 환경과(a), 건설과(1+a), 도시건축과(1+a), 농업기술센터(1+a), 보건소(a), 수도사업소(1+a), 거창경찰서(a), 거창소방서(a)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실과소 12명, 읍면 2명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음.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시
-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규모 5.0이상 지진통보, 사망자 및 실종자 발생 또는 화산재경보 발표시 등

2. 실무반 편성: 19+ α+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재난총괄부서의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부서의장)	○ 재난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	총 19+α+β명	
상황관리총괄반 (4+α명)	반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주사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팀(1)	- 행정과 직원(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협업기능반(α)	기획감사실(α), 행정과(1+α), 복지정책과(2+α), 안전총괄과(1+α), 경제교통과(2+α), 문화관광과(1+α), 산림과(1+α), 환경과(α), 건설과(2+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2+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나. 태풍: “태풍경보” 발표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규모 5.0이상 지진 발생이 통보되고, 광역적인 피해 발생시(복합재난 등),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등

2. 실무반 편성: 24+ α+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재난총괄부서의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부서의장)	○ 재난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임무총괄	
근무인원	총 24+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	반장(1)	재난수습주관부서 담당주사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안전총괄과(2명), 재난수습주관부서(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팀 (1+α)	- 행정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협업기능반(α)	기획감사실(1+α), 행정과(1+α), 복지정책과(2+α), 안전총괄과(1+α), 경제교통과(2+α), 문화관광과(1+α), 산림과(1+α), 환경과(1+α), 건설과(3+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3+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2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전 직원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9 + \alpha + \bet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재난총괄부서의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부서의장)	○ 재난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임무총괄	
근무인원	총 $4 + \alpha + \beta$ 명	
상황관리총괄반 ($4 + \alpha$ 명)	반장(1)	재난수습주관부서 담당주사 안전총괄과(2명), 재난수습주관부서(2명)
	상황관리총괄팀	
	수습상황피악팀	
협업기능반(α)	기획감사실(α), 행정과($1 + \alpha$), 복지정책과($2 + \alpha$), 안전총괄과($1 + \alpha$), 경제교통과($2 + \alpha$), 문화관광과($1 + \alpha$), 산림과($1 + \alpha$), 환경과(α), 건설과($2 + \alpha$), 도시건축과($1 + \alpha$), 농업기술센터($2 + \alpha$), 보건소($1 + \alpha$), 수도사업소($1 + \alpha$),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 비교: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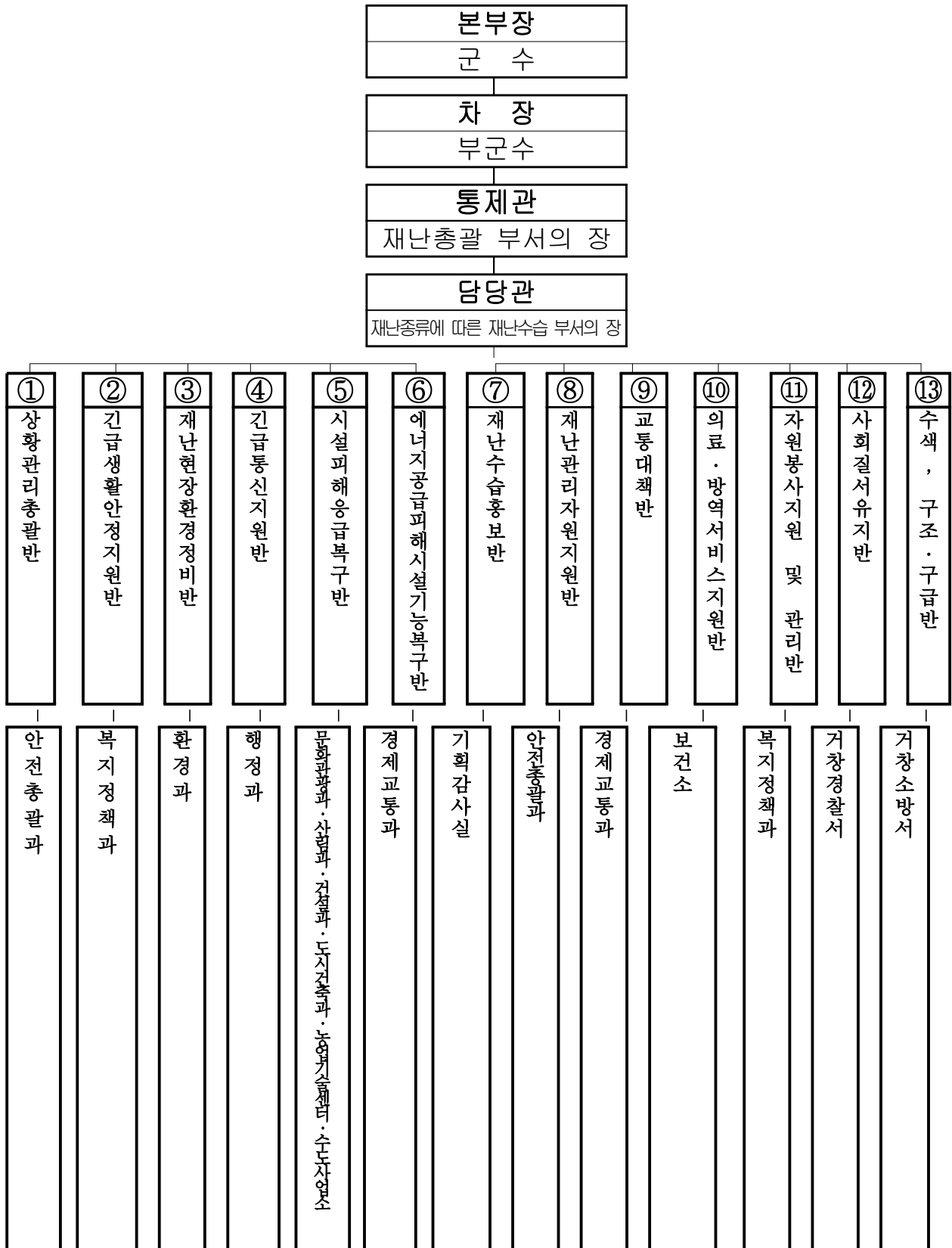
2. 협업기능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 6]

대책본부 구성도(제6조제2항 관련)



[별표 7]

사회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제20조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킬로그램)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금액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남/여)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 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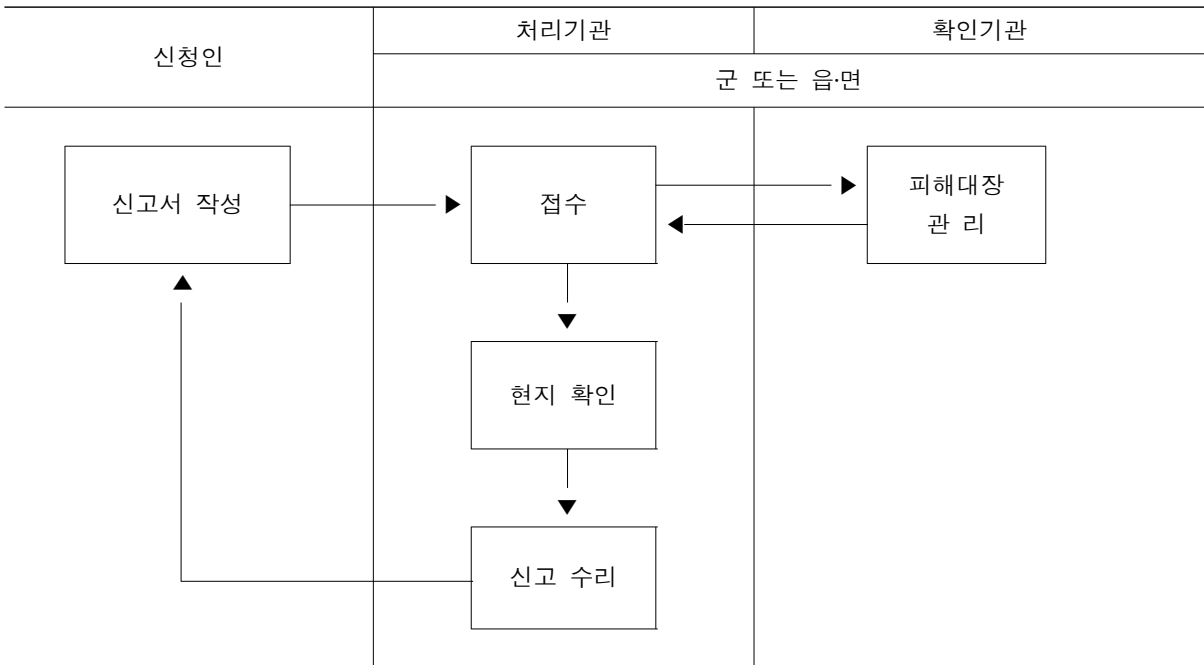
군수 또는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피해 대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원

2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3]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152
----------	----------

제출연월일	2017.11.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개정)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3조)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
- 실무반 구성을 상황관리총괄반, 12개 협업기능반,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으로 하고 실무반별 임무와 담당부서를 정함(별표 1)
- 재난유형별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함(별표 2)

다.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가동기준을 변경(안 제6조)

-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
- 자연재난(가동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사회재난별로 실무반 편성인원을 정함(별표 3~별표 5)

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규정(안 제7조)

- 비상단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근무 편성운영, 근무인원 등을 정함

마. 파견근무자가 사전교육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정함(안 제10조)

바. 재난복구계획 등을 심의하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13조)

아. 본부장은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자. 위기경보의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6조)
- 차.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기준을 정함(안 제17조)
- 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7조·제66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0. 23.~11.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 현황
 - 개정완료(6): 통영, 사천, 하동, 창녕, 거제, 양산
 - 입법예고(2): 김해, 의령
-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12월 27일

거창군 조례 제2437호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반사업,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 선임)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 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는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일부를 시설유지 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방침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 업무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업무담당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및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품의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
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
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진
사업의 활성화나 유희시설물의 활용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이성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7~148
----------	----------

발의일자	2017. 11. 23.
발 의 자	이성복, 이홍희, 강철우, 표주숙, 권재경, 박희순, 김종두 의원(7인)

1. 제안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 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8조)
- 다.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2018년 예산반영에 검토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1. 28.~12.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전국 제정현황(5): 괴산군, 영양군, 구례군, 진도군, 남해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등 인

2017년 12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23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붙임: 정원규칙(별표) 1부. 끝.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98
----------	---------

제출연월일	2017. 11. 21.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2명(안 별표)

- 본청 7급(증1): 90명 ⇒ 91명(행정·농업·녹지 1)
- 직속기관 7급(증1): 37명 ⇒ 38명(수의 1)

나. 일반직 8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8급(증1): 61명 ⇒ 62명(행정·복지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0조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0. 31.~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양동인

2017년 12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237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읍·면장의 직급(제27조 관련)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명	직 급 (복수)	관할구역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창읍 일원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주상면 일원
응양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응양면 일원
고제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제면 일원
북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상면 일원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위천면 일원
마리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리면 일원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면 일원
남하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하면 일원
신원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신원면 일원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가조면 일원
가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북면 일원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100
----------	----------

제출연월일	2017. 11. 21.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른 읍·면장 직렬 조정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 읍·면장의 직렬 변경(안 별표 2)

- 웅양면: 행정, 농업, 시설 ⇒ 행정, 농업, 시설, 환경
- 신원면: 행정, 농업, 시설, 환경 ⇒ 행정, 농업, 시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8조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0. 31.~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7년 12월 27일

거창군 규칙 제1238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포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억원 이상인 경우</p> <p>2.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p>	<p>제22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 ----- ----- 1. ----- ----- 2. ----- ----- ② ----- ----- ----- ③ ----- ----- ----- ----- <u>제출하여야 하고, 포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u> ④ ----- ----- ----- -----</p>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107
----------	----------

제출일자	2017. 12. 18.
제 출 자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절차를 보완함(안 제22조제3항)

- 포상금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나. 예산 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11.29.~12.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규칙 개정현황: 양산시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12월 27일

거창군 훈령 제418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붙임: 정원훈령(별표) 1부. 끝.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7~99
----------	---------

제출연월일	2017. 11. 21.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안 별표)

- 복지정책과(증원 1명): 행정·사회복지 8급(증원 1명)
- 환경과(증원 1명): 행정·농업·녹지 7급(증원 1명)
- 농업기술센터(증1): 수의 7급(증원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고시 제2017 - 166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 - 204호선)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80-173호(1980. 7. 14.)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0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소로2-204호선)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7. 12. 27.

거 창 군 수

1.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04	8.0	132.5	웅양면 노현리 229-6	웅양면 노현리 144-1	일반 도로	경고 제1980-173호	
변경	소로	2	204	8.0	133.0	웅양면 노현리 229-6	웅양면 노현리 144-1	일반 도로	“	선형 변경

나. 교통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04호선	○ 선형변경 - 웅양면 노현리 145-2번지 일원 - 당초 : L=132.5m B=8.0m - 변경 : L=133.0m B=8.0m	주변 토지이용가치 최대화, 현 실정에 합리적인 선형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8. 12.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계				7,307	1,116					당초
계				7,307	1,162					변경
1	응양면 노현리	229-6	도	46	10		거창군			
			도	46	10		거창군			
2	응양면 노현리	229-9	대	106	4		거창군			
			대	106	4		거창군			
3	응양면 노현리	1407-1	도	27	6		국(건설부)			
			도	27	6		국(건설부)			
4	응양면 노현리	1411-5	구	21	5		국(농수산부)			
			구	21	5		국(농수산부)			
5	응양면 노현리	228-3	대	125	3		거창군			
			대	125	3		거창군			
6	응양면 노현리	229-10	대	135	13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	한*록			
			대	135	13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	한*록			
7	응양면 노현리	1407	도	1,332	160		국(건설부)			
			도	1,332	160		국(건설부)			
8	응양면 노현리	146-2 (146-9)	대	521	40	울산광역시 남구 정광로24번길 *	김*선	근저당	*조합	
			대	521	33	울산광역시 남구 정광로24번길 *	김*선	근저당	*조합	
9	응양면 노현리	228-6	대	22	22	거창군 응양면 노현리 *	곽*림	근저당	*조합	
			대	22	22	거창군 응양면 노현리 *	곽*림	근저당	*조합	
10	응양면 노현리	1411-8	구	863	85		국(농수산부)			
			구	863	85		국(농수산부)			
11	응양면 노현리	146-1	잡	1,902	211		거창군			
			잡	1,902	221		거창군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2	웅양면 노현리	145-2	잡	807	331		거창군			
			잡	807	331		거창군			
13	웅양면 노현리	144-2 (144-3)	답	730	4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김*숙			
			답	730	4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김*숙			
14	웅양면 노현리	144-2 (144-4)	답	730	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김*숙			
			답	730	4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김*숙			
15	웅양면 노현리	144-1	답	670	58		거창군			
			답	670	58		거창군			

○ 지장물

순번	소재지	지 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격			주 소	성 명	
1	웅양면 노현리	228-1	창고	스레이트	9.7	㎡	경남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	노*용	
2	웅양면 노현리		창고	스레이트	21.39	㎡	“	“	
3	웅양면 노현리		처마	스레이트	7.035	㎡	“	“	
4	웅양면 노현리		가옥	스레이트	40.92	㎡	“	“	
5	웅양면 노현리		담장	블록(기초등포함) (30.6*1.7)	52.02	㎡	“	“	
6	웅양면 노현리		담장	블록(기초등포함) (2.6*2)	5.2	㎡	“	“	
7	웅양면 노현리		물건이전비	-	1	식	“	“	
8	웅양면 노현리		대문	철재(AL) 문주등포함	1	식	“	“	
9	웅양면 노현리		물탱크	FRP	1	식	“	“	
10	웅양면 노현리		감나무	50년생	1	주	“	“	
11	웅양면 노현리		장미나무	20년생	1	주	“	“	
12	웅양면 노현리	229-10	창고 (주거용)	조립식(기초 전기등포함)	28	㎡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	한*록	
13	웅양면 노현리		창고	경량철골조	19.8	㎡	“	“	
14	웅양면		담장	블록조	51	㎡	“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격			주 소	성 명	
	노현리			(30*1.7)					
15	웅양면리		담장	벽돌조-웁스및 기외포함(12*1.8) 보수비등포함	21.6	m ²	“	“	
16	웅양면리		견사	조립식(기초 전기등포함)	2	식	“	“	
17	웅양면리		마당	콘크리트조 (4*3)	12	m ²	“	“	
18	웅양면리		물품이전비	-	1	식	“	“	
19	웅양면리		모과나무	15년생	12	주	“	“	
20	웅양면리		소나무	10년생	15	주	“	“	
21	웅양면리		앵두나무	10년생	1	주	“	“	
22	웅양면리		물앵두	10년생	4	주	“	“	
23	웅양면리		보리수	10년생	1	주	“	“	
24	웅양면리		대추나무	7년생	2	주	“	“	
25	웅양면리		능수화	10년생	1	주	“	“	
26	웅양면리		능수화	5년생	1	주	“	“	
27	웅양면리		대추나무	40년생	1	주	“	“	
28	웅양면리		인삼및 도라지	-	10	m ²	“	“	
29	웅양면리		다육이등 초화류	벽돌등 (7*1)	7	m ²	“	“	
30	웅양면리	228	계단	콘크리트및화강 석상판(16.8*1) -부수비등포함	16.8	m ²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	곽*림	
31	웅양면리		화단	(7*2)+(8*3)+ (4*2)+(4*2)	54	m ²	“	“	
32	웅양면리		향나무	25년생	1	주	“	“	
33	웅양면리		향나무	20년생	1	주	“	“	
34	웅양면리		능수화	10년생	2	주	“	“	
35	웅양면리		박태기	10년생	1	주	“	“	
36	웅양면리		등근주목	15년생	1	주	“	“	
37	웅양면리		식나무	20년생	1	주	“	“	
38	웅양면리		영산홍	5년생	1	주	“	“	
39	웅양면리		장미나무	3년생	1	주	“	“	
40	웅양면리		반송	15년생	1	주	“	“	
41	웅양면리		육송	15년생	16	주	“	“	
42	웅양면리		눈향	20년생	2	군	“	“	
43	웅양면리	1407	화단	조경석등 (8*6)	48	m ²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	곽*림	
44	웅양면		영산홍	10년생	11	주	“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격			주 소	성 명	
	노원리								
45	노원면 노원리		반송	15년생	5	주	“	“	
46	노원면 노원리		옥향	10년생	3	주	“	“	
47	노원면 노원리		단풍나무	10년생	2	주	“	“	
48	노원면 노원리		주목	20년생	4	주	“	“	
49	노원면 노원리		앵두나무	20년생	1	주	“	“	
50	노원면 노원리		소나무	15년생	2	주	“	“	
51	노원면 노원리		라일락]5년생	2	주	“	“	
52	노원면 노원리		더덕 등	-	5	m²	“	“	
53	노원면 노원리		초화류 등	-	10	m²	“	“	
54	노원면 노원리	146-1	식당	조적조스레트및 슬라브	126	m²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	이*자	
55	노원면 노원리		마당	콘크리트	22.3	m²	“	“	
56	노원면 노원리		창고	블럭조 (3.5*2)	7	m²	“	“	
57	노원면 노원리		담장	블럭조 (6*2)	12	m²	“	“	
58	노원면 노원리		정화조	가정용	1	식	“	“	
59	노원면 노원리		수도	-	1	식	“	“	
60	노원면 노원리		대문	블럭조(샷시)	1	식	“	“	
61	노원면 노원리		대문	샷시조	1	식	“	“	
62	노원면 노원리		영업권	나영분식 (611-03-11104)	1	식	“	“	
63	노원면 노원리		시설이전비	주방기구및 영업시설 간판2식등	1	식	“	“	
64	노원면 노원리		화단	조경석등 (3.5*2.4)	8.4	m²	“	“	
65	노원면 노원리		박태기	15년생	1	주	“	“	
66	노원면 노원리		능수화	15년생	1	주	“	“	
67	노원면 노원리		영산홍	15년생	6	주	“	“	
68	노원면 노원리	145-2	가옥	기와	82.53	m²	거창군 거창읍 거월로 4길 *	이*영	
69	노원면 노원리		가옥	스레이트	18.36	m²	“	“	
70	노원면 노원리		가옥	기와	24.14	m²	“	“	
71	노원면 노원리		담장	블록	9.86	m²	“	“	
72	노원면 노원리		박태기	7년생	1	주	“	“	
73	노원면 노원리	145-2	화장실	스레이트	5.46	m²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	최*준	
74	웅양면		가추	스레이트	26.46	m²	“	“	

순번	소재지	지 번	지장물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품명	구조및규격			주 소	성 명	
	노현리								
75	노현면 노현리		가옥	스레이트	145.3	m ²	“	“	
76	노현면 노현리		가옥	스레이트	17.6	m ²	“	“	
77	노현면 노현리		창고	함석	3	m ²	“	“	
78	노현면 노현리		석류나무	50년생	1	주	“	“	
79	노현면 노현리		고엽나무	7년생	3	주	“	“	
80	노현면 노현리	145-2	차고	철재비닐등 (6*4)	24	m ²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	웅 김*순	
81	노현면 노현리		간이화장실	-	1	식	“	“	
82	노현면 노현리		도라지	-	10	m ²	“	“	
83	노현면 노현리	145-2	창고	결량철골조 (10*4.5)	45	m ²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	웅 최*이	
84	노현면 노현리	145-2	창고	스레트	38.9	m ²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	웅 신*도	
85	노현면 노현리	146-2	목련나무	15년생	1	주	울산광역시 남구 정광로24번길 *	김*선	
86	노현면 노현리		고엽나무	10년생	1	주	“	“	
87	노현면 노현리		대추나무	15년생	1	주	“	“	
88	노현면 노현리	146-1	느티나무	50년생	1	주		마을회	
89	노현면 노현리	144-1	소나무	R14-25 (약10~20년생)	14	주		도*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7.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5길 35 외 6건(부여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산137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65-132	20091228	2017-12-27	가북면 용암리를 지나 해인사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양기,음기를	
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0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2길 72-96	20090401	2017-12-27	덧골이라한데서 붙여진 법정리명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양기,음기를	
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01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3길 10	20091228	2017-12-27	덧골이라한데서 붙여진 법정리명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31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42-13	20090401	2017-12-27	행정구역명 모동을 이용하여 모동길로 명명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90-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5길 35	20090401	2017-12-27	마을 북동쪽 모래독걸 남쪽에서 아월천 서쪽일때까지의 논들 이름이 반영된 다섯번째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41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226-58	20090401	2017-12-27	천재가 살았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719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월곡길 1-112	20090401	2017-12-27	마을 남쪽 어귀의 청룡날이 반달 같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거창군 공고 제2017 - 1381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2007.03.29)로 최초 결정, 거창군 고시 제 2008-15호

(2008.03.13)로 최초 인가한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22.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가)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나) 명칭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3. 사업의면적 : 1,843,303㎡(대중제27홀)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계획

(단위:㎡)

합 계	체육시설	건축시설	공공시설	녹 지
1,843,303	427,861	12,800	98,573	1,304,069

○ 건축계획 : 건축연면적 11,503.1㎡, 클럽하우스 등 5동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구 분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성 명
당 초	경남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씨(주) 대표이사 박영찬, 남정호
변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코리아신타(주) 대표이사 최익중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08년 3월 13일 ~ 2017년 3월 12일

○ 변경 : 2008년 3월 13일 ~ 2019년 3월 12일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체육시설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1,843,303	-	1,843,303	경고92호 (2007.03.29)	계획관리 지역

7.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9.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10.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4필지		2,654,396	1,843,303					
1	신원면 덕산리	231	답	255	2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코리아신탁주식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지축 은행 전 형 준 이 규 진 주식회사국민은 행	
2	신원면 덕산리	255	임	205	2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 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지축 은행 전 형 준 이 규 진 주식회사국민은 행	
3	신원면 덕산리	256	임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 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지축 은행 전 형 준 이 규 진 주식회사국민은 행	
4	신원면 덕산리	257	임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 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지축 은행 전 형 준 이 규 진 주식회사국민은 행	
5	신원면 덕산리	374	답	2,172	2,1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 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지축 은행 전 형 준 이 규 진 주식회사국민은 행	
6	신원면 덕산리	377	임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 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지축 은행 전 형 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이규진 주식회사국민은행	
7	신원면 덕산리	378	답	873	8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전행준 이규진 주식회사국민은행	
8	신원면 덕산리	379	답	231	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전행준 이규진 주식회사국민은행	
9	신원면 덕산리	380	답	423	4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전행준 이규진 주식회사국민은행	
10	신원면 덕산리	391	답	833	8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전행준 이규진 주식회사국민은행	
11	신원면 덕산리	440	임	1,236	1,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전행준 이규진 주식회사국민은행	
12	신원면 덕산리	산13	임	2,641,554	1,830,46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전행준 이규진 주식회사국민은행	
13	신원면 덕산리	산52	임	4,165	4,1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14	수원백씨농계공파종중(대표자:백정석)			
14	신원면 덕산리	산59	임	2,182	2,1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거창씨씨개발유한회사	근저당	계통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은행 전행준 이규진 주식회사국민은행	

끝.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신설

-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3. 입법예고기간: 2017. 12. 28. ~ 2018. 1. 16.(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행정과장,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940-3169], 전화[940-3193] 또는 E-mail[nina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2조(의료업무수당) ①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 ----- 3. ----- ----- <p>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p>

[별표 5]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수의직렬공무원	월 500,000원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 다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수의직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 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에는 월 25만원 초과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월 250,000원(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